

창원지방법원 2021. 1. 12 선고 2020가단10835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경남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현빈

피 고 A

변론 종결 2020. 12. 15.

판결 선고 2021. 1. 12.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9. 6. 17. 체결된 양도계약을 9,646,24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646,249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구상금 채권의 발생

- 1) 원고는 2019. 5. 2. 'C'을 운영하는 B와 사이에 B의 D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를 보증원금 10,000,000원, 보증기한 2024. 4. 23.까지로 정하여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D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았다.
-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B은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원고가 권리의 실행 또는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고, 원고가 정하고 있는 지연손해금율은 연 10%이다.
- 3) B이 D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이자 지급을 연체함에 따라 2019. 9. 3.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9. 12. 30. D은행에 9,500,002원을 대위변제하고, 90,220원을 회수하였으며, 회수금에 관하여 확정 지연손해금 24원이 발생하였다.
- 4) 원고는 B에 대한 구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적절차비용으로 236,443원을 지출하였다.

나. B의 재산처분행위

- 1) 피고는 2016. 10.경 E으로부터 김해시 F 소재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에 임차하여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여 오다 2018. 5.경 B에게 'C'에 관한 영업을 양도하였다.
- 2) B은 2018. 5. 18. E과 사이에 E으로부터 김해시 F 소재 점포를 임대차보증금을 25,000,000원, 계약기간을 2018. 5. 17.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보증금은 피고가 E에게 지급한 돈으로 갈음하고, B이 피고에게

25,000,000원을 반환하여 주기로 하였다.

3) B은 2018. 6.경 피고에게 2,5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8. 9. 8.경 피고에게 지급하여야는 나머지 22,500,000원(= 25,000,000원 - 2,500,000원)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1. 원금은 매월 2일 1,000,000원 이상을 변제해야 한다.

2. 2020. 5. 30.까지 변제해야 한다.

3. 차용금액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C'의 보증금 22,500,000원을 일순위로 피고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C 임대인에게 고지하며 이를 이행해야 한다.

4) B은 2019. 6. 17. 이 사건 차용금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채무초과상태에 서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9. 6. 19. E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E은 2019. 6. 20. B에게 이 사건 채권의 양도를 승낙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5) E은 B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2020. 2. 3. 피고에게 연체 차임 및 수도료, 전기요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7,4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인인 2019. 6. 17.에는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청구권이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②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B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 채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2019. 9.3.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아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인 2019.6. 17.에는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③ 원고는 실제로 2019. 12. 30.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금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9,646,249원(= 대위변제금 9,500,002원 - 회수금 90,220원 + 확정 지연손해금 24원 + 법적 절차비용 236,443원)과 관련 지연손해금 상당의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피고는,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것은 2019. 6. 17.이 아닌 2018. 10.경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와 B 사이에 2019. 6. 17.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B이 2018. 9. 8. 또는 B이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않음으로써 2018. 10.경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여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이 B의 재산이 아닌 피고의 재산이고, 이 사건 채권양도행위는 피고와 B이 통정허위표시로서 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6호증, 갑 7호증, 을 1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B은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임대차보증금은 피고가 E에게 지급한 돈으로 같음하고, B이 피고에게 25,000,000원을 반환하여 주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B의 적극재산이 맞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고 이 사건 채권이 B과 E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여전히 피고의 채권이라거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3.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참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채권양수인인 수익자 등이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는 등으로 양도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 등을 상대로 그 채권양도의 취소와 함께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50061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기 전인 2020. 2. 3. E으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아 양도채권이 소멸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자신의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피고에게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원고의 채권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9,646,249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9,646,249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은정

별지

목록

B이 E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아래 내용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임대차계약일: 2018. 5. 18.

임대차 목적 부동산: 김해시 F 소재 점포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5. 17.부터 24개월. 끝.